

# 주요 경영상황 공시

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33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2016 년 10 월 5 일

금융투자협회 귀중

회 사 명 : 주식회사 머스트자산운용  
(영문명) MUST Asset Management Inc.  
(홈페이지) <http://mustinvestment.com>

본 점 소 재 지 :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30 길 39, 12 층(도곡동, 삼성엔지니어링)  
(전 화) 02-578-5080

대 표 이 사 : 김두용

담 당 임 원 : (직 책) 부대표이사  
(성 명) 구은미 (전 화) 02-578-5080

작 성 자 : (직 책) 경영관리팀 팀장  
(성 명) 박상은 (전 화) 02-578-5080

제 출 이 유 :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 2-59 조에 의한 주요 경영상황

※ 본 건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상황 공시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33 조제 3 항, 동법 시행령 제 36 조제 2 항제 1 호바목, 같은 항 제 2 호다목, 같은 항 제 3 호다목 및 같은 항 제 4 호라목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 2-59 조에 의한 『법정공시사항』으로 그 내용에 허위,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449 조제 1 항제 15 호에 의거 5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## 사업목적 변경

1. 변경내용		
-사업목적 추가		전문사모집합투자업
-사업목적 삭제		-
-사업목적 변경	변경전	1. 투자일임업 2. 투자자문업 3.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
	변경후	1. 투자일임업 2. 투자자문업 3. 전문사모집합투자업 4.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
2. 변경 주요이유		2016.09.29.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통보로 인한 사업목적 추가
3. 사업 추진일정		2016.10.07.펀드설정
4. 이사회결의일(결정일)		-
-사외이사참석여부	참석(명)	-
	불참(명)	-
-감사(감사위원)참석여부		-
5. 주주총회개최 예정일자		-
6.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		16.10.04. 변경등기 완료 및 16.10.05. 사업자등록증 변경 완료

### <기재상의 주의>

주 1) 사업목적 변경은 회사가 영업의 한 내용으로서 계속하여 영위할 사업내용에 변경(추가, 삭제 포함)이 있고, 이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신고한다.

주 2) “사업 추진일정”은 변경(추가, 삭제)된 사업에 대한 관계당국의 인허가(등록)여부 및 인허가(등록)신청예정일, 자금조달, 사업계획 등 사업목적 변경내용별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.

주 3) 상기사항 외의 계열회사변경과 관련하여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“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”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한다.

주 4) 당해 신고내용이 지주회사(외국지주회사 포함)의 자회사(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포함)에 대한 주요경영사항 신고의 경우 “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”란에 자회사명 및 자산총액비중(%)을 기재하되, 자산총액비중은 지주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대비 지주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주식의 최근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상 가액의 비중을 기재하고, 당해 사업연도중 편입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의 비중을 기재한다.